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3. 5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2월 18일

나. 제출자 : 김용범 의원 외 6인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2월 21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7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3. 2. 28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김용범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인권에 관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인권 정책에 관한 기본책무를 정하고, 인권증진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(안 제1조)
-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4조)
- 국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(안 제6조)
-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(안 제7조)
-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회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~ 안 제1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이 조례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장과 수준향상을 위해 구와 사업장, 기관 및 단체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, 인권증진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 용어를 정의하였고,
 - 안 제4조에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며,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7조에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 또는 권장 하고, 인권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 - 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인권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인권보장과 수준 향상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하위 법령인 자치구 조례의 특성상 다소 선언적 의미로 비취질 수 있으나,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민 인권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인권증진 활동에 이바지 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제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(김용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3년 2월 일

발 의 자 : 김용범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인권예 관한 구민의 권리 및 의무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인권 정책예 관한 기본책무를 정하고, 인권증진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보호와 증진예 기여함은 물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 회를 실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예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(안 제4조)
- 다. 구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 규정을 명시(안 제6조)
- 라.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증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(안 제7조)
- 마.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회”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 ~ 안 제1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

라. 자치법규안 : 별첨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인권”이란 「헌법」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.
2. “구민”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,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제5조(구민의 참여)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시책 시행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

야 한다.

제6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·평가
2.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3.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
4.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
5.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7조(인권교육)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(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전향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·지원

2.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

3.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.

제8조(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인권지수 개발)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·개발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설치 및 기능)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3.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국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1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
2.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
3.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
4.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
5.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12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

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4조(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위원장은 연 1회의 정기회를 소집하여야 하며, 구청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5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2. 위원의 직무상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
3.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
4.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6조(간사)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.

제17조(관련기관 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·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1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